

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성배, 권수정, 여 명, 임종국,  
김화숙, 김소양, 유 용, 권영희,  
김제리, 이상훈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할 바 있음.
-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0조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 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안
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 <u>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</u></p> <p>3. ~ 4.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3. ~ 4.(현행과 같음)</p>